##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2015년 6월 1일 조례 제1396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499호 일부개정 2023년 3월 6일 조례 제203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출자·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6. 7. 19〉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출자·출연 기관"이란 오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.
- 2. "출자·출연 기관의 장"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총괄부서의 장"이란 출자·출연 기관의 제도,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,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- 4. "주무부서의 장"이란 소관 출자·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·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- 제3조(조직·인력의 운용)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- 제3조의2(출자·출연기관의 장의 임기) ①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의 임명 당시에 재임(在任)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[본조신설 2023. 3. 6]

- 제4조(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오산시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되며,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
  - 2. 회의록 작성·보관·공개

[전문개정 2016. 7. 19]

- 제5조(임원의 해임 요구 등) ① 오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다.
  - ②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6조(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) ①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-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(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)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,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를 변경(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할 수 있다.
  - 1. 정부·시 정책 및 경영화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
  - 2.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
  - 3.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⑥ 시장은 성과계약 실적평가를 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- ⑦ 제1항·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서 작성 및 성과계약 체결은 주무부서의 장이,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,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서 작성 및 성과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.
- 제7조(임직원의 보수 등)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과계약서 실적평가 및 경영 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.
  - ②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8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 - 1. 사업계획의 수립,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
  - 2.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, 인건비 및 부대경비
  - 3.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
  - 4.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
  - 5.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
  - ③ 출자·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.
- 제8조의2(출자·출연의 사전의결)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지방 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 7. 19]

제8조의3(감사·보고 등)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「오산시 자체감사 규칙」에 따라 감사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

## 오산시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 7. 19]

- 제9조(지도·감독) ①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  - 1. 출자・출연 기관이 출자금・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
  - 2. 출자·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
  -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・출연 기관의 사무를 직접 지도・감독한다.
  - ③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출자·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)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  - 1. 설립허가 취소
  - 2. 설립 목적 달성 불능
  - 3.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
- 제11조(경영실적 평가 등) ①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·진단의 기본방향, 평가·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·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,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6. 7. 19〉
  -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, 경영성과, 업무의 능률성,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,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이행실적 평가,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
  -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·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- 1. 예산서와 결산서
- 2.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
- 3. 회계감사 보고서(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)
- 4.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
- 제12조(경영평가단의 구성·운영)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 달성 여부,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 - 1. 출자・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 - 2. 지방공기업·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
  - 3.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· 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
  - 4.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,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, 경영 실적 평가, 경영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, 경영실적 평가,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때에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.
- 제13조(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)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·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)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,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공공기관·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한 법인
  - 2.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·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
  - 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
  - 4.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
  -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15조(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)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〈2016. 7. 19 조례 제1499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〈2023. 3. 6 조례 제2037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·출연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제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.